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6231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22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8조의5(이의신청) ① <u>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 ③ <u>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 <신설>	제58조의5(이의신청) ① <u>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 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</u>

	<u>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</u>
--	--